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3. 3. 1.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업교육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6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목포과학대학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분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령" 제36조에 의거 매년 2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시감사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감사자의 구성) 감사자는 4인 이하로 구성하며, 총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은 감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4조(피 감사자의 의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5조(감사보고서) 감사자는 감사가 끝난 2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보고서의 내용)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협력단"의 세입·세출에 따른 결산의 확인
2. "협력단"규정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3.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5.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7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